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규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217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10월 20일
발 의 자: 임규호 의원(1명)
찬 성 자: 김성준, 김원태, 김태수,
민병주, 박승진, 박철성,
서상열, 송도호, 오금란,
유만희, 유정희, 이상욱,
이영실, 임종국, 한·신,
홍국표 의원(16명)

1. 제안이유

- 증가하는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대한 용적률 완화 등으로 숙박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서울도심 내·외 구분 없이 용적률을 3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안 제 51조제2항1호다목 및 사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제1호다목 중 “가목 및 다목의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을 “가목,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다목에도 불구하고 제48조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지역(서울도심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다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서 정하는 범위까지 용적률을 완화한다.

- 1) 서울도심 외 지역은 제48조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용적률 기준에서 최대 130퍼센트 이하의 범위
- 2) 서울도심 지역은 제48조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용적률 기준에도 불구하고, 서울도심 외 지역에 대한 용적률 기준을 준용하여 최대 130퍼센트 이하의 범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제51조제2항제1호사목 규정은 2029년 1월 4일까지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가 의제 되거나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까지 적용한다.

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라. ~ 바. (생략)

<신설>

<신설>

<신설>

-----.

라. ~ 바. (현행과 같음)

사. 다목에도 불구하고 제48조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지역(서울도심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다목에 따른 관광 숙박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서 정하는 범위까지 용적률을 완화한다.

1) 서울도심 외 지역은 제48조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용적률 기준에서 최대 130퍼센트 이하의 범위

2) 서울도심 지역은 제48조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용적률 기준에도 불구하고, 서울도심 외 지역에 대한 용적률 기준을 준용하여 최대 130퍼센트 이하의 범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제51조제2항제1호사목 규정

은 2029년 1월 4일까지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가 의제 되거나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까지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51조(용적률의 완화)제2항제1호다목의 내용을 수정(가목 및 다목의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 가목, 다목부터 미목까지의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하여 용적률 완화 대상 업종을 추가하고,
- 같은 호 사목을 신설하여 조례 제48호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지역에서 다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서울도심 외 지역 및 서울도심 지역에서 최대 130퍼센트 이하의 범위)하려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김 진 형

☎ 02-2180-7954

e-mail : kjh0816@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